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에 수유 가능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46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제2215646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에 수유 가능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안 제10 조제2항 신설 등)	2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221564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손명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26.
3. 회 부 일 : 2025. 12.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및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령에 ‘임산부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유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설치 의무가 불분명하여 수유실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임. 최근 지하철 이용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돌봄권 보장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내 수유실 등 기본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돌봄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에 수유 가능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을 위한 수유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에 개정안에 따른 휴게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생략) <u><신설></u>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에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휴게시설의 용도 및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및 안전을

현행	개정안
②·③ (생략)	위한 설비를 마련할 것 3.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적절한 물품을 구비할 것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행법령에서는 도시철도역사 및 철도역사에 수유실이 별도로 마련된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인¹⁾ 제도임.

【 도시철도역사 및 철도역사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 관련 현행법령 규정】

근거법령	해당 조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 2.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그 밖의 시설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개찰구	승강장	보안감시	여객 탑승교	대기 시설	임산부 휴게	

	대상시설									시설
	다. 도시철도 역사	○	○	○	○	○				○
	라. 철도 역사	○	○	○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2. 여객시설 서. 임산부 휴게시설 1) 설치장소 임산부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 가) 임산부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 수 있다. 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시설은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의 하부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2024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역사 및 철도역사에 수유실이 설치된 현황을 보면, 설치율이 도시철도역사는 55.4%, 철도역사는 56.6%에 불과하여 총 1,200개소 중 500개소 이상의 시설이 수유실 설치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38호, 2010. 6. 29., 일부개정) 별표2 제2호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59호, 2010. 6. 30., 일부개정) 별표1 전문개정

【 도시철도역사 및 철도역사 수유실 설치 현황(2024년 기준) 】

(단위 : 개소)

구 분	계	설치	미설치
도시철도역사	981	544(55.4%)	437(44.6%)
철도역사	219	124(56.6%)	95(43.4%)
계	1,200	668	532

자료 : 국토교통부,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잠정)

이에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구체적 근거를 두고 있는 준수 의무를 상향입법하고 이행 기간을 명확히 제시하여 강행력을 높이려는 취지로서 수유실 설치율 제고와 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수유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이용 대상을 현행 법령에 따른 ‘임산부’가 아니라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함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돌봄권 보장의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이 경우 휴게시설의 이용 대상이 여성에 한정되지 않고 영유아를 동반한 남성도 포함되며 휴게시설 이용자 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현행 기준에 맞게 휴게시설이 설치된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도 2년 내에 새로운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재설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이행 가능성 등 현실적 여건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제도 및 법규의 체계성 측면에서

첫째, 현행법령은 대상시설²⁾별로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와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체계인데, 대상시설 및 이동편의시설 중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의 특정 휴게시설에 대해서만 설치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세부 설치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하는 것은 현행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³⁾.

둘째,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의 휴게시설 설치기준과 설치의무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제10조에서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제11조제1항에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설치기준 준수의무를 규정하며, 제11조제1항 위반 시 교통행정기관의 시정명령(제29조) 및 시정명령 미이행 시 벌칙(제31조) 등 제재규정과 연계되는 체계이므로⁴⁾, 안 제10조제2항의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3) 참고로, 임산부 휴게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도 수유실 설치율은 14% (전국 159개소 중 23개소에 수유실 설치)로 매우 낮음. (2023년 ·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국토교통부)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조문 내용을 현행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1) 국토교통부

현행법령에 따라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한국철도공사

이용 수요 및 구조적 가능성(미정차, 맞이방 면적 부족, 무인역 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전면적 의무화는 예산 효율성 및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서울교통공사

공사(1~8호선) 대부분의 역사는 설치 의무 관련 개정법 시행(2010.6.30.) 이전 개통된 지하역사로, 공사 전역사 내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설치장소(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개정법 시행 2년 이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관련 설비(세면대 등)를 설치하는 것이 구조적·재정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현재 수유실 이용률('25년 기준, 일 평균 개소당 0.21명)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 수송 수요가 있는 개소에 우선 설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수유실 추가 설치를 위한 재정에 대한 국비 및 시비 지원이 필수적임.

4) 대전교통공사

①기존 시설물의 물리적·구조적 한계, 당사 역사는 2005~2007년에 준공되어 설계 당시 수유시설 부지가 반영되지 않음. 현재 대다수 역사는 유휴 공간이 전무하며, 역지 설치 시 내력벽 훼손 등 구조 안전성 저해 우려가 있음. ②재정적 부담 및 국비 지원 필요, 단순 설치 외에 급·배수, 환기 설비 등 대규모 개보수 비용이 수반됨. 운영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국비 100% 지원 조항이 명문화되어야 함. ③소급 적용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 위배, 준공 당시 법령을 준수한 기존 시설물에 대해 소급하여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함. 특히 2년이라는 단

기 내 일괄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④시민 안전(소방) 위협, 협소한 대합실 내 무리한 공간 구획은 화재 시 비상 피난 동선(유효 폭)을 침범하여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소방시설법」 등 타 법령과의 충돌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5) 의정부시

현재 기초지자체에서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운영 중인 경전철 역시 도시철도법 제26조 및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법 개정안 시행 시 모든 역사에 수유실 설치의무가 부여되나, 현실적으로 중전철 대비 경전철 역사의 규모가 협소하여 모든 역에 수유실 설치가 어려운 바 철도시설의 면적에 따른 휴게시설(수유실) 설치 여부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6) 용인에버라인운영(주)

역사 구조상 설치 공간 부재 등 기존 역사 내 새로운 공간 설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법률안 개정 시, 기존 역사 제외한 신설 역사를 대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7) 광주교통공사

역사 구조상 설치 공간 부재 등 기존 역사 내 새로운 법 시행 이전 준

공된 역사는 설계 당시 수유실 등 가족편의시설을 고려하지 않아 별도 공간 확보에 대한 즉시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수유실 설치는 단순 공간 조성이 아닌 건축·배수·전기·소방 복합 공사를 수반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여건상 자체 재원만으로 전 역사 설치를 2년 이내에 이행하기에는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됨. 역사별 이용 수요 편차가 큰 상황에서 모든 역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환승역·거점역 중심의 단계적 설치가 보다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여짐.

문 의 처
02)6788-5584